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기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66

발의연월일: 2020. 12. 7.

발 의 자:최기상·조응천·박영순

박용진 • 이탄희 • 김경만

이광재 · 최인호 · 정일영

윤건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(9명)으로 구성되는 재판관회의는 헌법재판소규칙의 제·개정, 예산 요구·예비금 지출과 결산 및 3급 이상 공무원 임명 등 재판소 운영의 중요사항을 관장하는 최고 의결기구입니다.

현행 「헌법재판소법」에 따르면 재판관회의를 개회하기 위한 의사 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함 께 임명된 다수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동일 시점에 교체되는 경우 등 재판관 공석으로 말미암아 재판관이 7명 미만인 경우가 생기는바, 이 에 재판소의 필수적 행정사무까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.

재판관회의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법원 대법관회의의 경우 「법원조직법」에서 의사정족수를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 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 독일 및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예산 등 주요 행정사항을 결정하는 전원합의체 및 전원재판부 역시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이에 재판관회의의 의사정족수를 대법관회의와 같이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주요 행정기능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16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제2항 중 "7명"을 "전원의 3분의 2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재판관회의) ① (생 략)	제16조(재판관회의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<u>7명</u> 이	② <u>전원의</u>
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	<u> 3분의 2</u>
찬성으로 의결한다.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